

# 메타버스 자율규약 시행세칙

제정 2024. 07. 17.

**제1조(목적)** 「메타버스 자율규약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율규제 프로그램 등 참여)** ① 협약사는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 관련 절차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② 협약사는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「메타버스 자율규약」(이하 “규약”이라 한다) 제23조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정부가 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,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사실을 협약사에 알리고 협약사의 의견이나 건의·제안 등을 취합할 수 있다.

④ 협회는 협약사가 전항에 따라 의견이나 건의·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의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⑤ 협약사는 협회에 언제든지 메타버스산업 관련 애로사항 및 규제 등의 개선 건의·제안을 할 수 있다.

⑥ 협약사가 전 항에 따른 건의·제안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약 제24조에 따른 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에 접수하여야 한다.

⑦ 위원회는 협약사의 건의·제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3조(확인서 등의 교부)** ① 협회는 협약사가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포상을 받은 사실에 관한 확인서와 확인 로고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협회는 확인서 및 확인 로고의 이용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, 협약사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법령준수·협조의무)** ① 협회는 협약사가 규약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 및 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,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협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‘메타버스 윤리원칙’과 ‘메타버스 실천윤리’를 내부운영·통제체계 등에 구현할 수 있도록 표준례 또는 우수사례 등을 배포할 수 있다.

- 제5조(표준분쟁해결절차 등)** ① 협회는 메타버스서비스등과 관련하여 협약사와 협약사 사이, 협약사와 이용자 사이 또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표준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협약사들이 규약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쟁 처리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- 제6조(분쟁해결절차의 위탁 등)** ① 협약사는 분쟁해결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의 운영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협약사가 협회에 분쟁해결절차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와 분쟁해결절차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협회는 협약사로부터 위탁받은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를 비밀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분쟁해결절차의 위탁과 관련된 비용 등은 협약사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.

- 제7조(분쟁해결 정보 등 제공)** 협회는 협약사가 분쟁해결절차를 구축·운영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우수 구축·운영 사례 등을 취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- 제8조(자율점검)** ① 위원회는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일반 및 분야별 체크리스트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② 협약사는 자율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협약사와 협의한 바에 따라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.

- 제9조(사전 통지 등)** ① 위원회는 규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협회에 요청하기 7일 전까지 협약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1.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규약 근거
  2.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
  3. 의견제출기한
 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약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위원회는 필요시 또는 협약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협약사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여 협회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협의회의 구성)** ① 협의회는 협약사들의 자율규제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(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협약사가 추천하는 자) 1인으로 구성한다.  
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협약사가 호선으로 정한다.  
③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- 제11조(협의회의 운영)**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,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 
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, 쟁점별 분과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- 제12조(직무의 대행 등)** ① 규약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규약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(지명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
②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협회 회장은 신속하게 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 
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

- 제13조(전문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심의·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·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 
②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규약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.  
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

- 제14조(의견의 청취)**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및 협약사의 임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제15조(수당 등)** 위원회, 분과·전문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